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2-47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6. 1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최근 당직근무 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증가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해야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, 당직 근무의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음.
- 나. 2006. 2. 2. 당직 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 후 6년간 인상이 없었으며, 타구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(60,000원)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 있음.
- 다. 이에 따라 당직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당직수당 조정(안 제3조제1항)

- 1) 현행 :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50,000원씩 지급하던 것을,
- 2) 변경 :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60,000원씩 지급하고,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0,000원씩 지급으로 개정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예산조치

가. 소요 예산 : 27,280,000원

나. 부족분 추경 예산에 편성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6조(실비보상등) 제1항
- 나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2. 5. 31. ~ 6. 10. (제출의견 없음)
- 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2. 6. 12.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[지방공무원법]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조례는 구”를 “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일·숙직 당직근무자별로”를 “당직근무자별로”로 하고 “50,000원씩”을 “60,000원씩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익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0,000원씩 지급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날인후”를 “날인 후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</u> <u>지급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</u> <u>지급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공무원법</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일·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구 본청, 보건소,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·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<u>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</u>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당직수당은 일·숙직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<u>50,000원씩</u> 지급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일·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공무원법</u>」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--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마포구</u> ----- ----- --.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u>-----.</p> 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) ① ----- <u>당직근무자별로</u> ----- ----- <u>60,000원씩</u> -----. 다만, 숙직 근무자 중 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 근무자에게는 <u>70,000원씩</u> 지급한다.</p> <p>② ----- <u>날인</u>----- <u>후</u> -----.</p>

제4조(시행규칙) 기타 당직수당 지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
다.

제4조(시행규칙) 그 밖에 -----

--.